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806번
- 제 안 자 : 이현찬 의원 (찬성자 11명)
- 제 안 일 : 2019년 8월 2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13일

## 2.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함(안 제4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19.8.19.~2019.8.26)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12.19.) 및 시행(2019.7.1.)에 맞춰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생략)  1. ~ 3. (생략)  4. 발달장애인 등 <u>중증장애인</u> 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발달장애인 등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이하 ‘본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1급부터 6급까지)을 각종 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의 주요내용(2019.7.1.시행) 〉

□ 「장애인 복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 등급’→‘장애 정도’, (법 제32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조사(법 제32조의4)
-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민관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 실시(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안 제2조, 제31조, 별표2)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연금공단에 위탁(안 제20조의4)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안 45조의2)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 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안 제2조, 별표1 등)
- 장애인진단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절차 등 규정(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 보행상 장애 세부기준을 고시로 위임(안 제28조)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과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여전히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법령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과 조례상 중증장애인의 개념은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장애인복지법」에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총 5회 사용하고 있으며, 제6조는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이라는 요건과 더불어 ② ‘장애로 인해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자’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제49조(장애수당)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본 조례의 중증장애인의 의미를 살펴보면, 제4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호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접근성을, 제3호는 장애 유형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였고, 개정의 대상이 되는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발달장애인 등 평생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으로, 본 조례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가 심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짐.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라는 목적에 따라 장애정도에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지원을 더한 개념인 것에 반해, 조례에서는 장애정도에 따른 평생교육상 차별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참여에 장애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한 지원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상위법의 ‘중증장애인’과 조례의 ‘중증장애인’이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같은 용어로 사용하던 것을 장애의 정도만을 표현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평생교육국은 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구축(2개 사업), 협력 네트워크 연계 강화(2개 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6개 사업)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2019.2.28. 수립)’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본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국은 16개 장애 유형 중 일부 유형(시각, 발달, 청각, 여성)만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 및 복합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의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장애정도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누락시키고 있는바,

※ 본조례 제4조제3호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장애의 유형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6. 기타 중복 장애 (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발췌·요약·재구성))

○ 본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제4조제4호는 제3호(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평생교육에 소외될 소지가 높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지원을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자의적 기준에 따른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조례의 입법취지를 잘 살피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본조례 제4조제4호 :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 평생교육국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도 없이 2020년 예산을 편성(서울시의 예산편성 시기 : 7~9월, 평생교육국의 예산제출 7월말.)하고, 집행할 계획으로 보이는바, 이는 전형적인 전례답습 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서울시의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립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본 개정안의 배경과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장애인 현황과 평생교육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현황 및 장애인 평생교육 참석현황을 요청하였으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 관련 자료는 평생교육국에는 없고,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등 복지본부에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과 관련한 자료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용역 준공(2019.12.) 후 제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 서울시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150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국의 예산은 2.8%에 불과한바, 평생교육국이 주도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2019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관련 예산 현황 〉

(단위:천원)

추진 과제	단위 사업		예산액
<b>총 계</b>			<b>15,071,020</b>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1-1.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35,020
2.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체계 강화	2-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정보 제공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	-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3-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평생교육과	344,054
	3-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7,875,000
	3-3.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6,396,000
	3-4. 시민제안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과	76,500
	3-5.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344,446
	3-6. 평생학습포털 내 청각장애인용 사이버강좌 제공	평생교육과	-

시민들의 요구와 서울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복지정책실의 사업을 기준으로 ‘끼워 맞추기식 계획 수립’과 성과평가를 위한 형식적 계획수립으로 조례의 제·개정 효과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원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관련 실·국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천원)

	소계	복지정책실	평생교육국	평생진흥원
금액	15,071,020	14,615,446	420,554	35,020
비율	100.0%	97.0%	2.8%	0.2%

- 종합적으로, 본 조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정도에 한정하여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용어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은 미흡한 점이 있는바, 차별없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